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5. 18.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2017년 5월 11일
-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7년 5월 11일
- 라. 상정일자 : 제2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 5. 1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서종석)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16.7.12.) 및 법제처 등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령 인용 조항 및 상위법령 중복 내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개정
(안 제33조, 안 제36조, 안 제91조)
 - 개정 전 3%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개정
 -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대상 신설(안 제18조의2)

-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제기구 및 비영리민간단체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과 범위 신설(안 제38조)

○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 개선 권고사항 반영

-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내용으로 해당조항 삭제(안 제16조)
- 조례로 위임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안 제25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8항의 규정하는 기업
- 관사의 용도를 직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우로 명확화(안 제48조)
-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내용으로 해당내용 삭제(안 제72조)
- 물품관리관이 아닌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검사토록 상위법에 규정된 바, 위배의 소지가 있어 해당규정 삭제(안 제83조)
- 질의회신 등은 법규성이 없는 행정 규칙에 불과하므로 조례에서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해당조항 삭제(안 제95조)

○ 법령 인용 조항과 상위법령 중복내용 조항 정비 및 현실에 맞게 보완

- 공유재산 심의회의 운영사항 중 심의회 생략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4조)
 - 심의회 생략대상을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개정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여 중복된 내용으로 해당조항 삭제
(안 제17조의2, 안 제91조의2)
- 인용 법령 정비 (안 제26조, 안 제27조, 안 제30조, 안 제32조, 안 제73조, 안 제84조, 안 제85조)

○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2016.7.12.) 전에 매매대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17조의2, 제33조, 제36조, 제9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목)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서 우리구 조례에 대하여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 및 그 밖에 법령 인용 조항, 상위법령 중복 내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임.

- 본 안건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16.12.19.)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
 - 둘째,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음.
 - 셋째, 법령 인용 조항 과 상위법령 중복내용 조항 정비 및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음.
 - 넷째,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개정하였음.
(안 제33조, 안 제36조, 안 제91조)
 -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대상 신설함.(안 제18조의2)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16.12.19.) 개정은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과 범위 신설(안 제38조)

-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의 개정 권고 사항 반영은
 -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내용으로 해당조항 삭제함.
(안 제16조)
 - 조례로 위임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 (안 제25조)

- 관사의 용도를 직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우로 명확화 함.(안 제48조)
-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내용으로 해당내용 삭제함.(안 제72조)
- 물품관리관이 아닌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검사토록 상위법에 규정된 바, 위배의 소지가 있어 해당규정 삭제함.(안 제83조)
- 현행 제95조(준용)이 불필요하여 삭제함.

- 법령 인용 조항과 상위법령 중복내용 조항 정비 및 현실에 맞게 보완한 사항은
 - 공유재산 심의회의 운영사항 중 심의회 생략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안 제4조)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여 중복된 내용으로 해당조항 삭제함.(안 제17조의2, 안 제91조의2)
 - 인용 법령을 정비함. (안 제26조, 안 제27조, 안 제30조, 안 제32조, 안 제73조, 안 제84조, 안 제85조)

-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함.

- 종합의견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및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개정이며, 그 밖에 법령 인용 조항 및 상위법령 중복내용 조항 정비 및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적합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8
----------	-----

제출년월일 : 2017.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규정을 법령의 위임사항에 맞게 신설·보완하고,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정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개정
(안 제33조, 제36조, 제91조)
 - 개정 전 3%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개정
-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대상 신설(안 제18조의2)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과 범위 신설(안 제38조)

나. 기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불일치 사항 등 정비

- 공유재산 심의회의 운영사항 등 개정(안 제3조, 제4조)
-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명확화(안 제25조)
- 관사의 용도를 직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우로 명확화(안 제48조)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여 중복되거나 법령 불일치 사항 삭제 및 정비
(안 제16조, 제17조의2, 제72조, 제83조, 제91조의2, 제95조)
-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인용조문 등 조항 정비

다.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2016.7.12.) 전에 매매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17조의2, 제33조, 제36조, 제9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4) 인권영향평가 : 의견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7.3.2. ~ 3.23.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항 중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영 제7조제3항”을 “영 제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구 내의 공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구 내의 공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24조제1항 중 “해지하고”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6조제1호 중 “국가산업단지”를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로, “일반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27조제4항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으로 한다.

제32조 중 “영 제16조 및 제34조”를 “영 제34조”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3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분납”을 각각 “범위에서 분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3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분납”을 각각 “범위에서 분납”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재산”을 “일반재산의”로, “연 3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연 3퍼센트의”를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8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행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8조 중 “사용에”를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70조제7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72조의 제목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을 “(불용품의 소요조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이상 2천만원 미만인 물품은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2조”를 “영 제77조”로 한다.

제83조를 삭제한다.

제84조제1항 중 “제83조”를 “영 제90조”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제83조 및 제84조제1항”을 “제84조제1항”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3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회 이내 분납”을 “이내 4회의 범위에서 분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8회 이내 분납”을 “이내 8회의 범위에서 분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2회 이내 분납”을 “이내 12회의 범위에서 분납”으로 한다.

제91조의2를 삭제한다.

제92조제2항 중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9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2016.7.12일자로 개정·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17조의2, 제36조 제1항·제3항·제4항,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2016.7.12일자로 개정·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2016.7.12일자로 개정·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발생일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전 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회의 구성) ① ~ ⑧ (생략)</p> <p>⑨ <u>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⑩、⑪ (생략)</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회의 업무)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p> <p>2. (생략)</p> <p>3. <u>대장가격이 2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u></p> <p>4. <u>다음 각 목의 구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u> <u>가. 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u></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회의 구성) ① ~ ⑧ (현행과 같음)</p> <p>⑨ ----- 한다.</p> <p>⑩、⑪ (현행과 같음)</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u>영 제7조제3항</u>----- ----- -----</p> <p>2. (현행과 같음)</p> <p>3. <u>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u></p> <p>4. <u>33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u></p>

나.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다. 군 지역(광역시외의 군 지역 포
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
미터 이하의 토지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
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행정재
산의 교환차금은 계약 체결후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일시에 전액 납부가 곤란할 경
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
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 설>

<삭 제>

<삭 제>

제18조의2(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
용·수익허가 대상) 영 제13조제3
항제18호에 따른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구 내의 공유 행
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제2호,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구 내의 공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한 경우에는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매각 대상 등)-----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영등포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 6. (생략)
- 제27조(대부료의 요율)① ~ ③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생략)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 9. (생략)
- ⑤ (생략)
-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1. -----
----- 외국인
을 위한 산업단지-----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4. ~ 6. (현행과 같음)
- 제27조(대부료의 요율)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

-----.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투자기업-----

 3. ~ 9.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
-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생략)
- ② ~ ④ (생략)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서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생략)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할 수 있다.

- 1.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 2.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할 수 있

-----.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

-----.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 1. ----- 범위에서 분납
- 2. ----- 범위에서 분납

③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다.

- 1. 5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분납
- 2. 5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 3. 1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④ (생략)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
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
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영등포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영등포구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
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5. 8. (생략)

- 1. ----- 범위에서
분납
- 2. ----- 범위에서
분납
- 3. ----- 범위에서
분납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일반재산의-----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 1. ~ 3. (현행과 같음)
- 4. -----

----- 산업단지 -----

5.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8. (생략)

<신설>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

1. ~ 5. (현행과 같음)

④ -----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 8. (현행과 같음)

9.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행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제48조(정의) 이 장에서 “관사”란 구청장·시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70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 6. (생략)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72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입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8조(정의)-----

-----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제70조(물품의 가격)-----
-----.

1. ~ 6. (현행과 같음)
7. ----- 제6호-----

제72조(불용품의 소요조회)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이상 2천만원 미만인 물품은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삭 제>

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삭 제>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삭 제>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삭 제>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삭 제>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삭 제>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삭 제>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

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결과 소요부서가 없으나 1년 이내에 수요가 예상되고 재활용이 경제적인 물품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73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72조에

<삭 제>

④ 제1항-----

-----.

<삭 제>

제73조(불용품의 매각) ① 영 제77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
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⑧ (생략)

제83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
사는 물품관리관(구의회사무국, 보
건소, 동을 포함한다)이 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직원 중에
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83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
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
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
게 한다.

②, ③ (생략)

제85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
83조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검

조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삭제〉

제84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영 제90조

-----.

②, ③ (현행과 같음)

제85조(물품검사서) ① ----- 제
84조제1항

사를 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되 1통은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구의회사무국·보건소·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9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생략)

제91조의2(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영 제82조에서 정하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제92조(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 ① (생략)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2. ----- 이내 4회의 범위에서 분납

3. ----- 이내 8회의 범위에서 분납

4. ----- 이내 12회의 범위에서 분납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92조(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④ (생 략)

제95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
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
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삭 제>